해약환급금

보험계리실무

1. 해약환급금의 의의

구 분

의의

해약환급금 cash surrender value 내 용

☞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중 사정에 의해 그 계약의 해약을 청구하였을 때,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약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

책임준비금

해약환급금

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의 보험금, 해약환급금의 지급 등 계약상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적립 하는 회계상의 부채 개개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지급 해야되는 약관상 의 채무금액

- 동일한 보험종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입연령, 성별,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 경과월수 등에 따라 달라짐
- 해약환급금의 지급
 - -. 해약환급금은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의한 해약의 경우
 - -.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
 - -.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
 - -. 보험가입금액의 감액
 - -.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시킨 등의 경우 등

2. 해약공제

구 분

히리

☞ 해약환급금의 기본이 되는 것은 책임준비금으로서 해약시 책임준비금 전부를 해약환급금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약공제라 함

☞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(7년)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해약환급금이 순보험료 식 책임준비금보다 적으며, 7년 이상 경과시에는 순보험료식 상당액을 지급하며, 이를 7년 상각식 해약환급금 이라고 함

이유

- 신계약비의 미상각분 공제
 - -. 신계약비에 사용되는 비용은 통상 초년도의 부가보험료 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신계약비의 미상각분을 해약공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됨 (즉,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보험가입 초기에 해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된 신계약비는 상각되지 않기 때문에 미상각신계약비(해약공제액)를 공제함)
- 위험율의 증가
 - -. 통상 해약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잔존계약집단의 평균위험률이 높아질 가능성
- 투자상의 불이익
 - -. 해약은 수시로 발생하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 하거나 환금이 용이한 자산의 형태로 보유함에 따라 자산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그 대가로 해약공제 함
- 사무처리비용의 발생
 - -. 중도해약 업무에 관련된 특별 경비가 필요함

3. 해약환급금의 계산

구 분

계산

내 용

- ☞ 해약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,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(미상각 신계약비)을 공제하여 산출
- ☞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해약공제기간(상각기간)은 최장 7년

해약환급금 (W_t) =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- (총예정신계약비 - 경과된 신계약비) =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- 해약공제(미상각신계약비) = $_tV-(\alpha-\frac{t}{12m} \cdot \alpha)$ = $_tV-\frac{12m-t}{12m} \cdot \alpha$

 $C_{t}V$ 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α 는 예정신계약비 m는 해약공제기간 t는 납입경과월수(2013.4월부터 납입기간경과월수에서 납입경과월수로 개정)

-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하되,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에는 7년으로 함
- 해약환급금은 연단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, 월단위 해약환급금은 연단위 해약환급금을 직선보간 (linear interpolation)하여 산출
- 해약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이 부치(-)로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며, 영(零)으로 처리
- 표준이율의 125% 단, 금리연동형 적립부분은 산방서에서 정한 부리이율 적용
- 표준해약공제액
- 표준위험율

